



책임보험의 이해

글 · 최상준 전무이사 유닉스전자(주)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인이익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적 급여를 하는 책임을 지는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익이다. 그리고 그 가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므로, 보험가액은 원칙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인 보험금액은 정하여진다. 우리나라의 상법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보험사고로서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민사상의 책임에 한한다. 또 영업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이에 포함된다.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급여를 할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을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이것은 직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입는 이른바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또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는 피보험자에게 속하는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전재산관계이므로 책임보험은 물건보험 이 아니고 재산보험의 일종이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화해 또는 재판으

로 인하여 확정된 채무(상법723조)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물론이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재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손해방지비용에 속한다. 그러나 법정면책사유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자와 제3자인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상법은 피해자인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보관자의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상법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책임보험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